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564
----------	------

2014년 3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10월 29일, 이순자 · 이정훈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3년 10월 31일

다. 상 정 일 자 : 제25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위원회(2013년 12월 18일 상정 · 질의답변)

제25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2014년 2월 27일 상정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순자 의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현재 운영비 등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특별시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나, 자체조례는 없는 상황임.

- 따라서 법에 조문화되어 있지 않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포함한 자체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큼.
- 이에 서울특별시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양재대)

(1) 제안 배경 및 개요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이는 현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하고, 지역사회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음.

(2) 세부사항별 검토결과

가. 지원대상 등(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적 지원 차상위계층이 입소·보호하는 시설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현재 서울시에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임.

〈표〉 개인 설치·운영 시설 현황 및 시보조금 내역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3호에 의한 시설

(단위 : 개소, %, 천원)

실국	담당과	시설(그룹)	전체 시설 (단위:개 소)	개인운영 시설 개소수 및 서울시 보조금		
				개인운영 시설 (단위:개 소)	개인운영 시설비율 (단위:%)	2013년 시 보조금 (국비) (단위:천원)
		총계	4,981	2,816	56.5	32,266,661 (4,397,497)
복지 건강실	소계		4,649	2,521	54.2	19,011,086 (258,494)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98	0	0	0 (0)
	어르신복지과	복지관 등 4개 유형	3,824	2,443	15.1	13,211,716 (239,645)
	장애인복지정책 과	장애인공동생활가 정 등 5개 유형	517	25	4.8	0 (0)
	장애인자립지원 과	장애인복지관 등 2개 유형	56	0	0	0 (0)
	자활지원과	노숙인 자활시설 등 8개 유형	43	10	23.2	1,360,093 (18,849)
	보건의료정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111	43	41.3	4,439,277 (0)
여성 가족 정책실	소계		332	295		13,255,575 (4,139,003)
	여성가족 정책담당관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32	16	50	0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26	10	38	245,231 (112,865)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시설	5	0	0	495,364 (184,202)
	아동청소년담당 관	아동공동생활가정	27	27	0	1,185,462 (443,081)
	아동청소년담당 관	지역아동센터	242	242	0	11,329,518 (3,398,855)

- 현재 서울시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¹⁾제2항의 규정에 따라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2)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총 2,816개소(복지건강실 2,521개소, 여성가족정책실 295개소)이며, 이는 전체 복지시설 중 56.5%를 차지하며, 이 시설에 322억6천6백만원의 시보조금(국비포함)이 지원되고 있음.

- 다만,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면, 자칫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이 무분별하게 양산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3)에 의한 보장시설로서,

둘째,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이상 유지하며,

셋째,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시설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1.26>
- ③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8.4>
- ④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2.1.26>
- ⑤ 제4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2012.1.26>
-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8.3>
 - 1. 사회복지법인
 - 2.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 3.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 한편, 노인시설 중 양로시설 운영사업은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되므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전액 시비 지원보다는 '15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⁴⁾되고, 장애인시설의 경우 개인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시설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며⁵⁾,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에는 '법인' 보다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함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 개인명의 시설로 변경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견해도 있음.
- 따라서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각 시설별로 특수성이 있어, 전체 개인시설에 대한 통일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4) 복지건강실 <어르신복지과> 의견 : 기획재정부 발표('13.09.24)에 의하면 분권교부세 사업인 양로시설 운영사업은 ' 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되므로, 개인운영시설에 대하여 전액 시비 지원보다는 '15년부터 국고보조를 통한 지원·검토가 필요함. 또한, 양로시설중 입소자에게 입소 비용을 전액 수납 받아 운영하는 시설은 개인운영 시설이더라도 지원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5) 복지건강실 <장애인복지정책과> 의견 : 개인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수요를 초과하여 무분별한 시설 증가예상

나. 보조금 지원 관련 (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인건비, 사업비, 기능보강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 한 것으로 보임.
다만 운영비로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조례 제정이후에는 349개 시설에 총 65억4천3백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중 복지건강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양로시설)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28개소의 개인운영시설에 약 45억8천만원이 추가 소요되며, 여성가족정책실의 경우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등 10개 시설에 19억6천1백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표〉 조례 제정 후 추가 소요예산
(운영비 전액지원의 경우)**

실국	담당과	시설(그룹)	개인운영시설 (단위:개소)	추가 소요예산 (단위:천원)	
	총 계		349	6,543,557	
복지 건강실	소 계		242	4,582,047	
	어르신복지과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3	1,878,07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거주시설	3	1,817,505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22	886,468	
여성 가족 정책실	소 계		107	1,961,510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가정폭력 및 성폭력상담소	10	1,528,258	
	출산육아담당관	민간어린이집	-	-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동공동생활가정	43	-
			지역아동센터	54	-
		입양가정	-	433,252	

다. 실태조사 관련 (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바,
- 이는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보조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시설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장·단기적인 지표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됨.

(3)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임.

특히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성을 전제로 하여 서울시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하여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할지라도, 향후 개인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수요를 초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분별하게 시설이 증가될 우려도 있으며, 조례안 제정 이후 추가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재원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에 서울시보조금을 지원한다면, 향후 개인이 보조금 수령을 목적으로 개인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특히 장기요양법이 생기면서 많은 수가를 받으려고 개인시설이 많이 생길 것임. 그리고 횡령이나 비리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데, 이 대해서는 제재수단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람.
- 답변 : 개인시설은 법인시설에 비해 통제가 미약함. 법인 시설은 설립허가 취소 등을 통해서 비리나 횡령사건일 발생할 때, 행정적인 제재수단이 있음. 그렇지만 개인시설은 그런 제재수단이 미약한 것이 사실임.
- 질의 : 이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까지 지원한다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 바람.
- 답변 : 민간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니라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 되지 않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 이유

-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

나. 수정 주요 내용

- 지원대상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임소정원의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564
----------	------------

제안년월일 : 2014년 2월 27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여 시설 지원에 대한 공정성·투명성·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은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3조)
- 나. 보조금의 지원 범위를 '공공요금 등 운영비' 등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나. 기 타 : 없음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이상 유지
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안 제5조 제1호 중 “운영비”를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 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 라 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 적 지원 차상위계층이 입소·보호하는 시설 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 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 외한다.</p> <p>제5조(보조금 지원) (생략)</p> <p>1. <u>운영비</u></p> <p>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지원대상 등) -----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 회복지시설 중 ----- -----사회복 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 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 장시설</p> <p>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 소정원의 50%이상 유지</p> <p>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삭제〉</p> <p>제5조(보조금 지원) (원안과 같음)</p> <p>1. <u>공공요금 등 운영비</u></p> <p>2. (생략)</p> <p>부칙</p> <p>① (시행일) (원안과 같음)</p> <p>② (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 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서울특별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개인운영시설을 건전하게 육성·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장시설
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소정원의 50%이상 유지
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등 운영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 시설 지원계획 수립 및 그 밖에 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시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구청장 및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8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는 「서울특별시 사무 위임조례」에 근거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을 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3조(지원대상 등) ①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회복지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호에 의하여 개인이 설 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 라 한다)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 적 지원 차상위계층이 입소·보호하는 시설 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보 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 외한다.</p> <p>제5조(보조금 지원) (생략)</p> <p>1. 운영비</p> <p>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p> <p>부칙</p> <p>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지원대상 등) ----- 서울특별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된 사 회복지시설 중 ----- -----사회복 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한 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의한 보 장시설</p> <p>2.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한 시설로서 입 소정원의 50%이상 유지</p> <p>3. 해당 시설별 관계법령의 설치기준 준수 〈삭제〉</p> <p>제5조(보조금 지원) (원안과 같음)</p> <p>1. 공공요금 등 운영비</p> <p>2. (생략)</p> <p>부칙</p> <p>① (시행일) (원안과 같음)</p> <p>② (적용제외) 「정신보건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호부 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시설에 관하여는 제3 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